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052

발의연월일: 2022. 4. 1.

발 의 자: 박완수 · 김성원 · 김예지

김용판 · 김정재 · 김태호

배준영 • 이명수 • 이종배

최형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법법"이라 한다)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부동산개발업법은 부동산개발업단체(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법 제29조제1항)를 두면서도,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규정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는바(법 제29조제5항), 설립인가 취소는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제29조).

법률 제 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정관, 설립인가의 취소,"를 "정관"으로 한다.

- 이 경우 회원의 자격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 2.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 5.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등의 명령 또는 조사·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협회의 설립 등) ① ~ ③	제29조(협회의 설립 등)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	4			
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5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				
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				
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u><후단 신</u>				
<u>설></u>	자격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			
	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			
	<u>우</u>			
	5.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고·자			

 ⑤ 협회의 정관, 설립인가의 취

 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u>⑥</u> (생 략)

료제출	등의	명령	또는	· 조
사·검사	에 응	·하지	아니	하거
<u>나, 거ろ</u>	[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	<u>우</u>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
- <u>⑥</u> -----<u>정관</u>-----
-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